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2. 27.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6년 2월 3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6년 2월 17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1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6년 2월 20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가. 제안 이유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시장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및 관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인정시장의 시설기준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8조)
- 시장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내지 제13조)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내지 제19조)
-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시장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 조례안 제2조 내지 제4조에는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의 정의와 적용범위, 지역시장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조례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인정시장은 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장이 아닌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 내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과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하고, 인정시장에는 상인회를 두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시장의 시설물 및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와 보수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조례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취득한 시설물(주차장 등)은 영등포구 소유로 하고, 시설물의 관리권은 시장관리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시장의 관리실태 점검을 규정하고 있고,
- 조례안 제16조 내지 제20조에는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5년 이상 관리를 의무화 하였고, 파손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관리자가 복구하여,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개인 또는 법인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고, 시장의 정비사업 등은 구청장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가능 여부 등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는 재래시장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한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인조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와 협의하는 등의 규정을 강화하여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 산업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查結課 : 原案可決